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557771 부당이득금(오납금) 반환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1. [redacted]

2. [redacted]시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6. 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redacted]은 1,311,016,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4.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5%, 2009. 5. 1.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3.39%, 2010. 4. 1.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redacted]시는 131,101,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4.부터 2009. 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30.까지는 연 5%, 2009. 5. 1.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3.39%, 2010. 4. 1.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가. 피고 [redacted]은 1,311,016,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4.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5%, 2009. 5. 1.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3.39%, 2010. 4. 1.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2012.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redacted]시는 131,101,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4.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5%, 2009. 5. 1.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3.39%, 2010. 4. 1.부터 2012. 2. 29.까지는 연 3.7%, 2012.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1) 원고는 1997. 8. 29. [redacted]국의 B 유럽법인(B회사, 이하 'B유럽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하기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C 주식의 20% 상당인 21,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12,000,000원에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8. 12. 2. B유럽법인과 사이에 위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하고, 2008. 12. 3. B유럽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 21,200주를 미화 10,280,000달러(한화 14,855,628,000원)에 매도하였으며, 그 무렵 B유럽법인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납부

원고는 2008. 12. 3. 피고 [redacted]의 산하 [redacted]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1,311,016,488원을 납부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납부한 소득세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피고 [redacted]시 산하 [redacted]구청장에게 소득세할 주민세 131,101,648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납부한 주민세를 '이 사건 주민세'라고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라. 원고의 주소 및 거주지

원고와 원고의 처인 D은 1986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redacted]주 [redacted] E에서 생활하고 있고 1987년경에는 [redacted]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와 D은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1년에 한두 달 정도만을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또한 원고는 1994년경부터 미국 뉴욕주에 소재하는 골프 클럽을 운영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7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다.

2)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지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이하 '한 · 미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라 미국 거주자는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되므로, 미국 거주자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3) 피고 [redacted]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세를 납부받은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한 · 미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 대상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받은 피고 [redacted]은 원고에게 납부액 상당의 돈을 반환해야 한다.

4)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신고납부방식의 소득세에서의 신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신고행위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확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redacted]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액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5)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지거나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액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면, 이 사건 주민세 또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 납부액 상당의 돈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 [redacted]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대상이지만 원고가 이를 신고 · 납부하였는바, 원고의 신고 · 납부행위로 인하여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발생하였다.

2)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원고의 신고 · 납부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3년의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원고의 신고 · 납부행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156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 [redacted]시의 주장

조세가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 · 절차법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고 [redacted]에게 자진 신고 · 납부하였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주민세를 피고 [redacted]시에게 자진 신고 ·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주민세의 신고 · 납부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3. 판단

가. 이 사건 양도소득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

1) 원고와 원고의 처인 D은 1986년경 [redacted]으로 이민을 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redacted]주 [redacted] E에서 생활하고 있고 1987년경에는 [redacted]영주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와 D은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1년에 한두 달 정도만을 국내에서 체류한 사실, 원고는 1994년경부터 [redacted]주에 소재하는 골프 클럽을 운영해 온 사실, 원고가 2008. 12. 3. B유럽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미화 10,280,000달러(한화 14,855,628,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위 매도대금을 B유럽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이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은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으로서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은 개인은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자본적인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주거를 미국에 두고 있는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1)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6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고, 구 소득세법 제119호 제1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9조 제1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비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원천소득이며,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비거주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세는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B유럽법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원천징수방식의 소득세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자진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바, 원고의 신고 · 납부행위로 인하여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그러나 ① 소득세법은 원천징수방식의 소득세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와 같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② 조세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경우 조세채무의 확정을 위해 행정청의 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③ 행정처분의 공정력은 행정청의 공권력적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일종의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힘을 말하는데, 행정청이 아닌 원고의 신고·납부행위로 인하여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에 공정력을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수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신고·납부행위로 인하여 공정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피고 [redacted]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됨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는 점(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참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인 조세를 오납하였다면 그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갖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직접 국가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인 조세를 오납하였다면 그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가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원고와 같은 원천징수대상자도 원천징수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과오납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인 B유럽법인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통한 원고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점, ㉢ 실체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납세의무자이고 부당이득제도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을 실질적인 공평의 관점에서 조정하는 법리인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오납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설령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신고·납부행위로 인하여 공정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참조), ① 원고의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가 없는 점[피고 대한민국은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1항이 신고행위의 근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의 소득(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이므로,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② 원고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인 B유럽법인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통한 원고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고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또한 피고 [redacted]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156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였어야 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형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형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면제 대상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면제신청이 없더라도 감면요건이 갖추어지면 당연히 감면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redacted]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1,311,016,4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12. 4.부터 2009. 4. 30.까지는 1일 10만분의 13.7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2009. 5. 1.부터 2010. 3. 31.까지는 1일 10만분의 9.3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39%, 2010. 4. 1.부터 2012. 2. 29.까지는 1일 10만분의 11.8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1천분의 40),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1천분의 34), 2014. 3. 14.부터 피고 [redacted]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6. 11.까지는 연 2.9%(1천분의 29)의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각 비율(별지 관계법령 제5항 기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참조)로 계산한 돈을, 그 다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redacted]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 131,101,6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를 납부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12. 4.부터 2009. 4. 30.까지는 1일 10만분의 13.7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2009. 5. 1.부터 2010. 3. 31.까지는 1일 10만분의 9.3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39%, 2010. 4. 1.부터 2012. 2. 29.까지는 1일 10만분의 11.8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7%,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 2013. 3. 1.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3.4%, 2014. 3. 14.부터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11.까지는 연 2.9%의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각 비율(별지 관계 법령 제6항 기재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참조)로 계산한 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도우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판사 김지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별지

관계 법령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7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주식·출자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4. 제119조 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15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9조

⑪ 법 제119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등을 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 시에 법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 시에 법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삭제 <19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는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제1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1976년 6월 4일 서울에서 서명, 1979년 10월 20일 발효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주소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주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구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제16조【양도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인 자산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b)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동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소득의 수취인이

(ⅰ) 과세연도 중 총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ⅱ) 동수취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 상기 (1)(a)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15조(부동산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기 (1)(b)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5.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국세환급가산금 결정 시 적용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07-32호, 2007. 10. 15.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3.7의 율로 한다.

○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09-6호, 2009. 5. 1.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9.3의 율로 한다.

○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0-5호, 2010. 4. 1.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1.8의 비율을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부칙 <제262호, 2012. 2. 2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부칙 <제320호, 201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 3. 14. 시행, 기획재정부령 제404호)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부칙 <제404호, 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6.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지방세기본법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76조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환급금이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연세액(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일할계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5.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 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로 한다.

② 제76조 제6항에 따라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하고, 그 밖에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말한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환부이자 계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금을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 제47조의 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6

정에 의한 날로부터 과오납금을 충당하는 날 또는 과오납금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부이자"라 한다)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환부이자 계산)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한다.